



출판계,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 따른 결의문 채택 “독서 증진에 기여하는 도서정가 안정화 위해 최선”

대한출판문화협회(회장 고영수)와 한국출판인회의(회장대행 윤철호)를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(회장 박정태), 한국기독교출판협회(회장 민병문), 한국아동출판협회(회장 강기준), 한국학술출판협회(회장 김진환) 등 출판 관련 단체는 지난 6월 24일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‘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출판계 결의문’을 채택해 발표했다.

글 | 임남숙 기자 sang@print.or.kr

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은 ‘출판문화산업진흥법’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도서정가제법이 결과적으로 책값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법 개정 이전의 할인 판매를 염두에 둔 정가 책정이 책값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출판계 일각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.

이에 대해 출판계는 책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해야 하며,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책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서점의 살리는데 목적을 둔 도서정가제법 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,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국민의 독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도서정가 책정과 재조정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결의문에 담아냈다.

출판단체는 결의문에서 “도서정가제의 확립은 무너진 출판생태계 복원과 출판 진흥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고, 출판이 문화의 원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출판 산업의 발전은 문화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개정 도서정가제 법률은 업계와 정부, 국회가 모두 뜻을 모아 독자의 관점에서 의논하고 합의한 결실인 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법률이며, 도서정가제의 확대와 정착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”라고 언급하면서 ▲출판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의 지식 창조력 향상을 위해 출판의 다양성 확보와 좋은 책 출판과 보급 ▲국민의 독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도서정가 책정과 재조정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해 도서가격의 안정화 ▲국민의 지식문화 향유권 확장과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동네 작은 서점 활성화 ▲책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창작의욕 고취와 안정적 저작환경 조성을 통해 우수 저작물 생산을 장려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.

|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출판계 결의문 | |
|---|----------|
| 1. 우리는 출판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의 지식 창조력 향상을 위해 출판의 다양성 확보와 좋은 책 출판과 보급에 노력한다. | 회장 고영수 |
| 2. 우리는 국민의 독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도서정가 책정과 재조정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여 도서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. | 회장대행 윤철호 |
| 3. 우리는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권 확장과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동네 작은 서점 활성화에 노력한다. | 회장 박정태 |
| 4. 우리는 책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창작의욕 고취와 안정적 저작환경 조성을 통해 우수 저작물 생산을 장려도록 노력한다. | 회장 민병문 |
| 5. 우리는 국민의 독서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, 도서관과의 상생 협력 강화와 범사회적 독서진흥 운동 참여를 통해 책 읽는 사회 정착에 노력한다. | 회장 강기준 |
| 6. 우리는 한 나라의 지식과 문화의 척도인 책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 질서 확립에 다 함께 노력한다. | 회장 김진환 |

2014년 6월

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(사)대한출판문화협회 | 회장 고영수 |
| (사)한국출판인회의 | 회장 대행 윤철호 |
| (사)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| 회장 박정태 |
| (사)한국기독교출판협회 | 회장 민병문 |
| (사)한국아동출판협회 | 회장 강기준 |
| (사)한국학술출판협회 | 회장 김진환 |

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이번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“개정 도서정가제 시행과 정가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독자의 몫이어서는 안 된다는 출판계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”라며 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당 할인 경쟁과 과행적인 유통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출판계의 의지를 담아낸 것이다”고 설명했다.

한편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(도서정가제법률)은 ▲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의 정가제 적용 ▲도서 할인율 15% 이내(단, 현금 할인 10% 이내 + 마일리지 등)로 제한 ▲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재조정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 ▲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 적용 등을 담고 있다.